

연구 자료

##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 동향

최 세 균\*

1. 머리말
2. 무역과 환경
3. 투자자유화
4. 무역과 경쟁정책
5. 무역과 노동기준
6. 무역과 부패문제
7. 맺음말

### 1. 머리말

최근 국제기구와 지역경제협력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협상결과의 이행 가속화와 추가적인 자유화 논의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환경, 노동, 경쟁정책, 부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세계무역기구(WTO), OECD, 지역경제협력체(APEC, EU 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세계 경제

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7년여의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되었으며, UR협상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었다. WTO는 세계의 주요 교역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교역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UR협상의 성과는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감축 등 주로 국경조치의 벽을 낮추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04년까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들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 수입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가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수출국들은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무역자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부연구위원

그밖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 가운데는 각국의 국내 정책과 경제 관행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R협상 결과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한 마라케쉬 각료회의(1994. 4.)에서는 UR 이후 공정한 국제교역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 OECD 각료이사회와 G-7정상회의 등을 통해 환경, 노동기준, 투자, 경쟁정책 등 네 가지 의제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부패(뇌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WTO의 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도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새로운 라운드의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험을 살려 보다 단기적으로 마무리지어 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농업 분야에 또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들 새로운 이슈들은 WTO 출범 이후 논의되고 UR협상 결과의 가속화 및 지속적 개혁 논의와 함께 WTO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형성될 국제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 의한 논의이든 WTO의 해당 위원회를 통한 논의이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협상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논의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5대 의제별 성격과 논의 과정, 각국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무역과 환경

최근 각국의 경제개발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지구 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야 하나 환경 또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가스)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 급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각종 동식물의 재생능력 저하와 멸종 등은 인류의 번영과 지구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의 보존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적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산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을 해치면서 생산된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결국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교역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가 국제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국제 교역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 친화적 기술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품 교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지금까지 자유무역과 이를 통한 국제 교역의 확대를 지향해온 WTO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인가에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OECD, APEC 등에서도 활발히 토의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환경문제가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일방적인 무역 제재조치의 발동이나 비관세 장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와 교역이 연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첫째, 환경보호와 개발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명제의 조화 둘째,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협약 체결 셋째, 장기적 환경보호 대책으로써의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 등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의 보호나 개발이냐의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은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나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은 선진국이었음을 들어 생존을 위한 개발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에 의해 지구환경문제에 대

한 기본적인 규범이 합의된 바 있다. 여기서 리우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설립되어 유엔의 환경관리를 위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국들간의 이견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은 부족한 상태이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협약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130여 가지가 체결되었으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18개에 이른다(최영진외 1995). 중요한 협약들로는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뎀핑협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있다. 환경협약은 오염물질의 사용 및 교역 규제,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보호,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 보호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위의 규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환경협약은 규정위반국가와 협약 비가입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또는 규제조항을 두고 있어 각국의 교역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이라는 논의가 깊어 있게 진행되고 있다. 리우선언 이후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OECD, UNCTAD,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CSD,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1995년 1월 정식으로 발족한 WTO 무역환경위원회는 마라케쉬 각료회의

당시(1994. 4. 15.)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WTO 각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UR협상 종결 당시 위임받은 10개의 의제를 검토해왔다. 동 위원회는 그 결과를 1996년 12월 WTO 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은 1996년 7월에 배포되었으며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될 최종안이 11월에 배포되었다.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10개의 의제 가운데 농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의제3과 의제6으로 볼 수 있다. 의제3은 주로 환경세와 환경관련 기술요건과 관련된 논의이다. 환경세 문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세 제도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 정도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세 수준 결정의 기술적 문제, GATT 정신 또는 규정과의 문제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이해당사국들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관련 기술요건과 관련하여서는 GATT 규정과 표준 및 기술 관련 규정, 포장, 환경표시, 재활용 등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제품의 수명 평가,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동식물 검역, 환경마크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의제6은 환경관련 조치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들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한 환경적 이익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무

역장벽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 목적의 강력한 각종 정책들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보호 목적의 각종 규제를 다자간무역협정(WTO협정)의 틀 속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경쟁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비용은 선진국이 부담하고 개도국은 이에 무임승차한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 강력한 환경보호적 국제규범의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쟁력 유지목적의 보호무역주의적 발상으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 등 환경 관련 지원과 WTO 규정내에서의 특별대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서는 현안의 포괄성과 복잡성을 입증했다고 표현하면서도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이나 환경과파적 보조금이나 관세구조의 조정 등에 있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12월에 열린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논의를 위한 후속작업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조류를 감안할 때 국내적으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국제경쟁력 확보와 환경관련 무역규

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경관련 기술투자 및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 산업에 대해서는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마크제, 환경상계관세, 각종 환경 관련 부과금 등 환경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무역규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약을 타결시킬 수 있도록 외교-통상 차원의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가 지구환경의 보호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 있으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에 오히려 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제적, 통상적 부담을 지우는 환경협약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을 협약에 대하여는 선도적 입장을 견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서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일차적으로 인접국가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지역적인 환경관련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ESCAP 환경협력

정부간 회의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과 관련된 기술협력, 상호 이해 증진, 다자간 협상에서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투자자유화

세계경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이에 따른 경제논리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개방화 등에 힘입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1970-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개도국들은 외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상업차관 제공을 자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외채 위기는 국제경제의 호조 등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외채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상업차관 규제와 경기호조는 개도국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인정책으로 이어져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에 따른 국제 시장의 단일 시장화는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는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한 지역경제체제내의 논의와 다자간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EU, NAFTA, APEC 등 지역주의 차원

에서의 투자자유화 논의, UR 투자자유화 협정, OECD 투자협정을 비롯하여 미-일, 미-EU간의 투자자유화 협상 등 국제적 투자자유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UR협상을 통해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협정, 서비스협정 등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흐름을 규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투자관련 분쟁해결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공산품 교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 즉 유통기반시설,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및 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투자활동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협상과 함께 개도국을 포함하는 세계적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서 WT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OECD에서는 구체화되었으나 이를 WTO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은 내국민대우, 다국적기업의 영업행태에 관한 지침, 회원국간 상충되는 규정 적용의 자제, 투자유인 및 제한 조치에 관한 상호협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절차, 정기적인 검토(3년마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OECD 투자규범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나 점차 관습법적인 법규범으로 발전하여 회원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영진 외 1995). OECD는 UR이

후 다자간 투자협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GATT 규정내에는 국제투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UR협상에서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형태로 부분적인 투자관련 규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선진국들이 주장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투자규범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투자규범의 제정을 UR 이후 최대의 무역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WTO 협정에 의하면 TRIMs는 WTO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규정의 보완 여부에 관한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EU, NAFTA, APEC 등 지역경제체제에서도 투자자유화에 관한 규범이 제정되어 있으며 점차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어 다자간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NAFTA도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자유화 범위, 투자수익 송금자유화,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등의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다.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투자규범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APEC의 선언은 비록 비구속적인 권고적 규범이나 향후 다자간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투자규범의 제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제적 투자규범의 제정을 WTO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EU,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반대하는 국가들은 인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이 1996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차 WTO 각료회의에 의제별로 APEC의 입장을 공동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과 투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APEC에서는 각국의 경제, 무역,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을 가진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내국인 대우 투자제도의 투명성 보장 등 12개항의 비구속적 APEC 투자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는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을 참고하여 WTO 차원의 협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UR협정의 이행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태에서 투자유치국의 이익을 무시한 내국민대우 원칙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 규범의 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외국 기업의 회사설립권, 내국민대우 보장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결국 WTO 차원의 논의는 가능하나 협상을 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우선 실무작업(Work Program)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양자간 무역마찰의 축소 등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경제정책의 자율성과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의 구조가 선진국에 뒤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4. 무역과 경쟁정책

UR협상의 타결로 관세, 비관세 등 대부분의 국경보호조치는 폐지 또는 완화되었으며 이제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장구조, 기업관행 등에 관한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는 국가마다 상이한 국내 경쟁조건을 형성하게 하는 법규와 관행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것이다. 경쟁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반경쟁적 행위는 입찰담합, 덤핑, 독과점, 가격차별 등이 있다. 기업은 카르텔, 기업합병, 독점적 지위남용 등을 통해 이러한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업간의 계열하청, 시장담합, 생산량조절 등에 관한 규범들과 독과점규제법 등이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투자와 무역자유화의 증가로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무역분쟁과 왜곡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밖에 일부 국가의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국경조치의 무역장벽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과 국내 산업정책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UR 이후 이러한 경쟁 제한적인 기업활동과 산업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GATT 창설 당시에도 이미 논의되었으나 경쟁조건의 국제적 조화가 국내 산업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국제 규약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독일, EU 등 양자간 및 지역협정간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각국 경쟁정책의 조화 문제와 무역과 관련되는 경쟁정책의 개념 또는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영토외(Extra-territorial)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마찰을 해소하는 시도이다. 이는 각국의 경쟁정책 관련 제도의 차이, 주권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분야에 속한다. OECD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논

의는 타분야에 비해 부진하였다. OECD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은 경쟁규범의 적용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7개의 비구속적 권고조항이 있을 뿐이다. OECD에서는 경쟁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업합병에 관한 심사절차의 통일, 경쟁정책 위배적 기업결합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의 통일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제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에 도입되었으나 ITO의 발족이 무산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UR협상의 타결 등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제투자가 시장접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내의 정책과 법규, 관행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범의 통일이 공정한 경쟁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활동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법적용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GATT는 GATT 규정에 합치하더라도 경쟁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정도로 경쟁관련 규정을 운용하여 왔다. WTO에서는 이러한 GATT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일부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조달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서비스협정, 긴급구제제도(Safeguard)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등에 제한적이거나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무역과 경쟁정책과의 문제는 논의의 초기 단계에 있다. OECD를 통한 개념정립과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WTO 등 다자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논의가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상호 연계성에 관한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국가간 협력체제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논의는 OECD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시장개방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거래관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간의 무역구조조정 협의를 통한 일본시장 개방의 노력이 일본의 거래관행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국제화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OECD의 연구는 국내 기업의 수평적 협정, 수직적 협정, 유통체제 등이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간 수평적 협정 즉,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 카르텔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수출 카르텔의 가격 및 물량조절과 입찰 조작 등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수직적 협정은 부품조달과 제품판매를 위한 제조업체간의 협정이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유통체제와 관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허가제도, 자격요건 등이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의해 제한될 경우 관련 외국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독과점금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쟁정책의 개념이 기존의 WTO 규범내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도입될 것인지 또는 국별 국내법과 관행의 통일을 통한 형태로 논의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WTO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논의는 WTO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로도 충분하며 싱가포르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로서는 양자간 협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다자간 논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WTO를 통한 논의는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과 OECD의 경쟁정책에 관한 대응으로 경쟁정책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WTO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국별 기준의 통일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국내 시장조직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독과점금지법을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교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무역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제정되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5. 무역과 노동기준

UR협상의 타결로 국경조치는 철폐 또는 완화되었다는 인식하에 공정한 국제 교역을 위해서는 이제 국제무역을 규정하는 국내 경

쟁조건들의 형평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무역과 근로조건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880년 제정된 미국의 최수노동을 이용한 상품의 수입 금지, 하나바헌장, ILO 헌장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인 이슈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노동기준을 벗어난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국제교역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논리로 일부 선진국들의 실업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이 제기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낮은 근로조건하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사회적 덤핑으로 불공정한 무역으로 간주하여 무역체재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선진국들 내에서도 국별로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노동기준 또는 근로조건의 개념 설정에 관한 논의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노동기준은 국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 기준의 설정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내용인 강제노동, 유아노동, 결사의 자유 등 기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면서 국제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은 보장해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노동자의

권리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게파르트 의원의 입법화 추진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유럽국가들 가운데서는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노동문제의 다자간협정을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의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고 저임금 활용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선진국 내부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만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15세 이하의 아동노동, 최수노동, 강제노동의 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선·후진국간 차이를 인정하지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은 모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절대적 노동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SIAN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선진국들의 내부적인 실업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의 자유무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연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와 각국의 상이한 국내 노동관련 법규들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논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다자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들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라케쉬 각료회의와 ILO 총회에서 ASEAN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개도국들은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가운데 개도국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경제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국제적 규범으로 제정하여 규율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는 내정간섭적, 주권침해적 요인이 내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의 반대는 이러한 논의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OECD는 노동인권의 신장이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ILO와 WTO간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우선 최수노동과 아동노동 등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여 논의의 기틀을 형성하고 점차 노동자의 집회와 결사권 보장 등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무역과 노동문제가 연계된다면 단기적으로 중국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조건이 ILO의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분야의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노동관련 규범을 국제적 수준에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무역과 관련시켜 WTO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우선 ILO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무역제재 등 강행수단의 도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국제교역자유화 간의 연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의 WTO 상정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 의제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들은 무역과 노동 문제를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SEAN 등 개도국들은 WTO에서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도국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

운 보호무역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ILO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ILO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국내 노동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이해 증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수 노동에 의한 상품교역에 대한 제재조치는 GATT 제20조 e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핵심 사항들은 현재의 규정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의 무역과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의도에는 무역제재를 위한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6. 무역과 부패문제

국제적 계약에 있어서의 뇌물수수 등 부패적 관행이 기업간, 국가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무역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자간 무역규범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과중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유발하는 뇌물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OECD를 통해 실효성 있는 뇌물 제재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정부조달 분야의 부패적 거래 관행의 철폐를 위해서 정부조달협정을 현

제의 양자간협정에서 다자간협정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WTO 의제로 제기(제2차 APEC 통상장관회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부패문제는 무역외적 문제로 이러한 의제가 WTO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계약과 입찰과정을 둘러싼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패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WTO 각료회의 의제로 거론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에 가입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무역제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통상산업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 업계,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7. 맺음말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통상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들에 비해 각국의 국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의와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의제를 자신들의 주도권하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로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각국은 모두 무역자유화라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제, 자유화 속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사회, 문화적 관행과 관련이 깊은 새로운 의제들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를 들면 APEC은 회원국 공동의 의견을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이 회원국간의 이견조정에서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다자간협정의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협상에 회부되기 이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경제협력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WTO 각료회의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WTO의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를 하나의 틀 속에 통합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

영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국내법과 규범을 국제적인 협정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국제적 추세인 단일 시장화에 맞게 배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UR협상 타결 이후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검역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여 WTO협정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 조직은 주로 일반 행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순환보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분야에서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통상 및 협상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제도이다. 통상협상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통상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진은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에서 대략적인 방향과 의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에 상정될 의제를 선정하는 WTO의 각종 위원회와 OECD, ILO, FAO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료회의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행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부문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가 타부문의 자동협상 의제와 일관성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체제 구축하고 선진국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농림부. 1996. 농업통상여건의 변화와 향후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최근의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 정책자료 96-02.
- 대한상공회의소. 1996. 「WTO출범 1주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세종연구원. 1994. 「WTO 체제와 한국의 전략」.
- 왕윤종. 1996.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정책연구 9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영관. 1996.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민음사.
- 최영진 외. 1995. 「뉴라운드 - UR 이후 새로운 경제 이슈들」, 지식산업사.
- 최정섭, 임송수. 1996. 무역·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방향, 농정연구포럼 제39회 정기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농정연구포럼.